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회사(단체 포함, 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산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위탁의 과정)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위탁생의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현재 산업체에 재직중이며, 재직중인 사업장의 4대 보험에 가입된 자로 한다.

제4조(위탁생의 선발과 입학)

- ① 위탁 대상자는 재직 중인 산업체에서 추천한다.
- ② 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 ③ 입학전형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 위탁교육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위탁생의 제적기준)

- ①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학업 유지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될 수 있다.
- ②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학업 유지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될 수 있다.
- ③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 대학 내 산업체 위탁교육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업을 유지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정의 편성)

- ① 본 협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제7조(위탁생의 신분) 본 협약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본 대학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202 년 월 일

울 산 과 학 대 학 교

총 장 조 홍



산업체명 : _____

대표자명 : _____

직인